



금융감독원

보도참고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배포시	배포	2023. 3. 9. (목)		
담당부서	민생금융국 불법사금융대응2팀	책임자	팀장	김경환	(02-3145-8285)
		담당자	선임조사역	김유진	(02-3145-8526)

'금융당국 명의를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미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에 유의하세요!

■ 소비자경보 2023 - 7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주요 내용>

□ 최근,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접근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 '23.1.1.~3.3. 기간 중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총 46건 접수

○ 특히, 이들은 주로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금융당국*** 명의를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① 금융당국 명의를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 ②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③ '고수익 보장',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자금을 모집시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세요!
- ④ 불법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1 유사수신 등 사기 수법

① (손실 보상으로 접근) 최근 불법 업체들은 “○○투자그룹 **주식리딩**으로 인한 **손실복구**”나, “▲▲투자그룹 **가입비**를 **환불**”해준다고 전화 (대포폰 추정),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등으로 접근*

* 불법업자간 정보공유를 통해 알게 된 투자자의 투자종목, 손실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추정

② (금융당국 명의를 가짜 문서 사용) **금융당국**이 보낸 **공문**인 것처럼 조작한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투자자를 속이는 등 사기수법이 대담

*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명령이라고 투자자를 속임

③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유명 증권사의 상호·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해당 **증권사로 오인**케 하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가장**

○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가입을 유도하거나 소속 **임직원**(명함 및 사원증 위조 등)인 것처럼 **속여**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

* 유사한 상호, 인터넷 주소 사용

④ (신규 투자를 유도) ‘**원금보장**’, ‘**고수익(또는 확정수익) 보장**’이라며 **가상자산** 등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한 후

* 저가에 가상자산을 살 수 있는 기회이고, 곧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므로 **거액의 차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

○ 허위의 **사실 거래시스템***(HIS)을 통해 실제로 **가상자산** 등을 **매입**한 것처럼 시스템에 **표시**되도록 조작하여 투자자를 **안심**시킨 후 **투자금 편취·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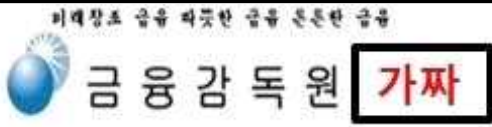



* 금융투자회사에서 사용하는 모의 투자 프로그램과 유사하며 잔고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지만 실제로는 **매입/매도** 등의 거래가 발생하지 **않음**

2 주요 피해 신고·제보 사례

①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 제시

- ◆ 제보자 A는 '20년~'22년 중 ◎◎투자그룹(주식 리딩방)에 가입한 후 주식 투자 손실을 보았는데, '23.1월경 ◎◎투자그룹의 손실보상팀이라고 사칭하는 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의 권고 조치에 따라 손실을 본 고객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준다고 **원금보장을 약정**하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 및 SMS를 받음
- A는 업체 담당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총 3,5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이후 **담당자와 연락 두절**

[금융당국 명의의 가짜 문서 제시 사례]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문서 사례	금융위원회 명의의 가짜 문서 사례
<div style="text-align: center;">  <p>비대장포 금융 파듯한 금융 돈돈한 금융</p> <p>금융감독원 가짜</p> </div> <p>(경유)</p> <p>권고일자: 2023년 01월 21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업체에 <u>금융감독원이 권고조치 내린 공문입니다.</u> 금융감독원은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명령권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u>계좌동결처리 및 환수조치되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사의 계좌의 투명성을 입증합니다.</u> 금융감독원은 주후 피해자 신분 입증 시, 금융사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 및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보호 조치를 할 것이며, <u>계약서 상의 명시된 투자금 손실 및 입회비 환불에 대한 계약내용(기간별 수익률 보장 등)을 권고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 할 것을 명령합니다.</u> 또한, 자후 추가 피해 신고 누적 시에는 최대 5천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자 메일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담당자 김연정 행정사무관 김현욱 금융감독원 위원장 이복현</p>	<div style="text-align: center;">  <p>금융위원회 가짜</p> </div> <p>제목 2022년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상품 선정평가 결과 알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상품 선정평가 결과, 귀 기업이 신청한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귀 기업은 선정평가위원회 결과 및 총괄심의위원회 의견사항을 반영한 연구개발계획서 보완본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후 추가보완 또는 협약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운영규정 제24조 제1항에 의해 평가위원회 및 전문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와 임의로 연구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가. 제출서류 : 붙임2 참고 나. 제출일자 및 장소</p> <p>1) 제출일 : 2022. 12. 21(수), 18:00까지 2) 제출장소 : 평가 위원회 3층 회의실</p> <hr/> <p>붙임 1. 2022년 유사투자자문 피해구제 상품 선정평가 결과 1부. 2. 평가결과 보완 및 협약서류 제출 안내 1부, 끝.</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②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 ◆ 제보자 B는 과거 ▲▲투자그룹 주식 리딩방을 가입하여 손실을 본 경험이 있는데, 최근 유명 증권사인 ●●투자금융의 온라인 거래소에서 활동하는 리딩 전문가라는 자로부터 **과거에 발생한 투자 손실**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 수익**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음
 - 단기간에 **수배의 차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B는 1,000만원을 입금하였고 실제 ●●투자금융 거래 시스템(사설 HTS)에서는 수익이 나서 잔고가 약 1억 7,000만원 인것으로 보여짐
 - B가 수익금 출금을 요청하자 수익금의 20%(3,400만원)을 입금해야 출금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으나, 이후 **담당자와 연락 두절**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 무단 도용한 불법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례]

불법업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사칭

●●투자금융 BTC/USDT ETH/USDT GOLD GBP/AUD 입출금신청 마이페이지

거래를 위한 모든 기능을 한 손으로
모두 함께 암호화폐 구매 하십시오.

자산관리회원 8,701명 관리선정회원 375명

왜 ●●투자금융 인가요?
왜냐 하면 ●●투자금융은 ●●투자금융입니다

제도권 금융투자회사 사칭

정직
정직한 투자의 DNA에 있습니다. 모든 원금, 레버지는 모두 시금과 공개적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철저한 승인이 있습니다.

혁신
선진투자금융의 시대 같은 세상, 앞을 향해 도전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거래 운영을 완벽하게 운영하여 고객에게 최우선을 제공합니다.

고객 지향
고객에게는 맞춤형 투자 전략을 통한 최고의 수익을 제공합니다. (3가지)를 통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사하여 배우기
복사하여 배우는 방법을 설명하고, 복사하여 배우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복사하여 배우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고객에게도 제공합니다.

사회적 특징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유한 고급 기능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최고의 수익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복사하여 배우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고객에게도 제공합니다.

●●투자금융 파트너사

③ 가상자산 투자 빙자 유사수신

- ◆ 제보자 C는 과거 ◆◆투자그룹 주식 리딩방을 가입하여 손실을 본 경험이 있는데, 최근 ◆◆투자그룹 손실보상팀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5,000만원 이내로 **손실을 보상**해 주려고 하는데 **현금 보상이 어려우니 F가상자산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전화를 받음
 - 특히, F가상자산이 곧 **상장될 예정**이므로 **수십배의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고 원금에 손실이 생길 경우 **판매가격에 재매입**한다는 내용의 **양수도 계약서**까지 제공하면서 C를 현혹하여 **2,3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함**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가상자산 양수도 계약서 사례]

[redacted] COIN 양수도 계약서

[갑] 성 명 : [redacted]
주 소 : [redacted]

[을] 성 명 : [redacted] 입금 금액 : [redacted]
입고 날짜 : [redacted] 입고 수량 : [redacted]

‘갑’은 ‘양도인’으로 하고 ‘을’을 ‘양수인’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1. ‘갑’은 ‘을’이 소유하고 있는 [redacted] COIN을 ‘을’에게 양도한다.
2. ‘을’은 양수 시 ‘갑’에게 양수도 대금을 지급 한다.
3. ‘갑’은 ‘을’에게 추후 코인으로 수익을 보더라도 ‘을’에게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에게 양도받은 [redacted] COIN이 예수보호기간 동안 거래불가 또는 원금손실 발생시 ‘갑’이 ‘을’에게 해당 [redacted] 에 재매입 한다.

원금 보장 약정

5. ‘갑’에게 [redacted] COIN 양도 이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닐 시 ‘을’은 민형사
6. ‘갑’은 ‘을’이 재매입 의사를 밝히면 청구를 청구시점 기준으로 78이내에 완료한다.
7. ‘갑’은 ‘을’에게 계약완료일까지 거래소로 코인을 이동,판매 방법까지 안내해줄 의무가 있다
8. ‘갑’과 ‘을’은 양수도 계약 이후 철회가 불가하다.
9. 양수도 계약서는 ‘갑’과 ‘을’의 상호 합의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갑’과 ‘을’은 위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계약한다.

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소지한다.

[redacted]

[redacted]

3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불법 업체와의 거래로 발생한 **손실은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 사항 및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① **금융당국 명의를 가짜 문서를 보여주면서 과거 투자 손실 보상을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업체와는 절대 거래하지 마세요!**

- 과거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손실을 보상(주식리딩방 관련 투자 손실 보상, 가입비 환불 등)해 주겠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명시된 공문 등을 제시하면서 접근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 추가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질 필요
- 특히, 금융당국 명의를 가짜 문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절대 거래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에 신속히 신고 또는 상담 요청*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 3번)

②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제도권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오인케 하거나 소속 임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홈페이지의 진위 여부 및 담당자의 성명과 부서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fine.fss.or.kr)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

③ '고수익 보장',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자금을 모집시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하세요!

-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금·적금 등 제한적이며 투자성 상품의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는 없으므로,
 -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고수익(또는 원금) 보장' 등 비정상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 업체와는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도록 유의
- ※ 특히,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는 계좌는 대부분 '대포통장'이므로 입금 등 차금 이체는 절대 금지

④ 불법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 거래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요구(수수료 명목 등의 추가입금 요구 등)를 하거나 사기 의심시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
-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반드시 투자 권유 등 관련 증빙자료(녹취, 문자메시지 등)를 첨부하여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유통신고 코너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